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2. 15 선고 2021가단5585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중채, 나광엽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전남 영암군 D 전 94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40㎡ 지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남 영암군 D 전 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합유자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 및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1) 부분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 이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비닐하우스를 최초로 설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원고들의 부친)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철거 및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고들 제출 증거, 이 법원의 F 주식회사(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닐하우스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당시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관계가 물권의 설정 등으로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적인 것에 불과하여 특정승계인인 원고들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별지

1)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D 대 943㎡’라고 기재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는 ‘D 전 943㎡’의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다.